

중앙소방학교 공고 제2019-39호

2019년도 국가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필기시험 장소 등 공고

2019년도 국가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필기시험 장소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3월 15일
중앙소방학교장

1. 시험일시 및 장소

가. 시험일시 : 2019. 4. 6.(토) 10:00 ~ 11:00

※ 시험시작 30분전(09:30)까지 입실완료, 이후 입실 불가

나. 시험장소 : 중앙소방학교 본관 (붙임 약도 참조)

2. 필기시험 준비물

가. 응시표 (2019. 3. 27.(수) 14:00 이후 <http://119gosi.kr> 에서 출력가능)

나.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, 운전면허증, 기간만료 전 여권)

※ 위 신분증을 제외한 학생증, 자격수첩, 공무원증, 장애인등록증(복지카드)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

다. 필기도구 (컴퓨터용 흑색사인펜)

3. 응시자 유의사항

-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해당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며, 공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시험장의 물품 등을 파손하는 경우 응시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합니다.
-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문제지는 통합편철 되므로 응시자는 응시분야의 시험과목을 정확히 답안지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문제지 편철순서
시험과목	① 국어 ② 생활영어 ③ 소방학개론 ④ 소방관계법규 ⑤ 영어 · 화학(소방교), 구조(소방사) : 국어, 생활영어, 소방학개론

- 필기시험 성적열람은 4. 15.(월) 14:00 ~ 4. 16.(화) 18:00에 중앙소방학교 원서접수(<http://119gosi.kr>)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원서접수 종료 이후 필기시험 전(前)일까지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, 의사상자 등 지정을 받았거나 개명,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응시생은 관련서류를 아래의 제출방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< 제출방법 >

- ◆ 제출기간 : 2019. 4. 5.(금) 18:00 도착 분까지 인정
※ 제출기간 이후 제출된 증빙자료는 인정하지 않음
- ◆ 제출방법 : 등기우편 또는 인편
- ◆ 제출서류
 - 가점 :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확인서, 의사상자 등록증
 -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자 : 신청서,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
- ◆ 제출처 : ☎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
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경력경쟁 채용시험 담당자

※ 원서접수 시 가점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관련자료를 업로드한 응시생은 추가 제출하지 않아도 됨
※ 증빙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생 본인의 책임임

- 기타사항은 2019년 2월 8일에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 ‘2019년도 국가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시행계획’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<문의전화> (평일 09:00 ~ 18:00 가능, 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)

- ◆ 채용시험(필기, 체력, 면접 등)
 - 문의처 :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
 - 연락처 : 041-550-0927, 내선 1
 - 주 소 : ☎31068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
- ◆ 응시표 출력,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
 - 문의처 : (주)에니아소프트
 - 연락처 : 043-219-1332

- 붙임 1. 필기시험 장소 안내 1부.
 2. 필기시험 답안지 1부.
 2-1. 답안지 작성 및 채점기준 1부.
 3.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부.
 4.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부.
 5.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부. 끝.

<붙임 1>

필기시험 장소 안내 <중앙소방학교>

□ 자가용 내비게이션 이용 시

○ 시험장 주소 :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

□ 대중교통 ※ 개략적인 정보로서 자세한 정보는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택시이용	버스이용
천안버스터미널	택시	택시 승강장 이용(약 15분 소요)
	버스	51번, 52번(터미널 앞 승강장 출발, 1시간 간격 운행, 약 35분 소요)
천안역	택시	택시 승강장 이용(약 15분 소요)
	버스	51번, 52번(천안역 건너편 기업은행 앞 출발, 1시간 간격 운행 약 20분 소요)
천안아산역	택시	택시 승강장 이용(약 30분 소요)

※ 버스이용 시 배차간격이 길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시험장 안내



<붙임 2-1>

필기시험 답안지 작성 및 채점기준

□ 득점 산출기준

- 답안지는 OMR 스캐너로만 판독하므로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
- 점수산출은 OM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름
- 채점관련 기타사항은 시험관리위원회 의결에 따름

□ 인적사항 및 책형표기

- 답안지를 받으면 본인의 인적정보(성명, 응시번호, 필적감정기재)를 정확히 기재(표기)하고, 책형란에 본인 문제지의 책형을 “●”로 표기
-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 반드시 기재(표기)사항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(표기), 모든 기재(표기)사항 작성은 시험종료 전까지 해당 시험실에서 완료
- 인적사항 및 책형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(무효처리 등)

□ 답안지 표기방법 및 주의사항

-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<예시>와 같이 “●”로 정확하게 표기,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(득점 불인정 등)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

<예시> 올바른 표기 : ● 잘못된 표기 : ◐ ⊗ ⊙ ⊖ ⊕ ⊗ ⊙ ⊕ ⊖ ⊗ ⊙ ⊕ ⊖

- 농도가 얇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사용으로 답안 마킹이 흐리거나, 답란을 전부 채우지 않고 작게 점만 찍어 마킹한 경우 OMR 판독이 되지 않을 수 있음
- 적색(청색)볼펜, 연필, 샤프펜 등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 될 수 있음
- 불량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사용, 답안란 마킹 잘못, 답안지 여백 낙서 등으로 채점불가 시 일체 정정이 불가하며 응시자 본인 책임
- 답안지는 훼손, 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,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를 훼손해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

□ 수정테이프 등 사용

- 표기한 답안을 수정할 경우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답안지 교체
- 수정테이프, 수정액 등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책임

연번	응시자 주요 실수유형(예시)			처리결과
< 답항 미판독 : 득점 불인정 >				
1	미지정 펜으로 답항표기	연필	① ② ③ ④	문항 미판독
		볼펜	① ② ③ ④	
		형광펜	① ② ③ ④	
		적색볼펜	① ② ③ ④	
2	잘못된 방식으로 답항표기	점(·)	① ② ③ ④	
		사선 /	① ② ③ ④	
		체크 ✓	① ② ③ ④	
3	농도 열린 사인펜으로 표기		① ② ③ ④	
< 답항 중복판독 : 득점 불인정 >				
4	예비마킹, 다른 답항표기		① ● ③ ④	2,4 중복판독
			① ② ③ ●	3,4 중복판독
			① ② ● ④	2,3 중복판독
5	부주의한 실수로 두개 답항표기		① ② ③ ④	3,4 중복판독
			① ② ③ ④	아래문항 1,3 중복판독
			① ● ③ ④	위문항 2,4 중복판독
6	답항 너무 크게 표기		① ② ③ ④	아래문항 1,3 중복판독
			① ② ● ④	
7	수정테이프 사용 불안전 처리		● ② ③ ④	1,3 중복판독
			① ② ● ④	1,3 중복판독

※ 최종 점수산출은 OMR 스캐너 판독결과에 따름

<붙임 3>

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

1. 취업지원대상자

- 기준일시 :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
 - ※ 응시원서 제출이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경우,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필기시험 전일 18:00까지(도착)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제출
- 가점부여점수 : 만점의 5% 또는 10%
- 적용대상 : 채용시험이 필기·실기·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,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 한다. 다만,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%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- 가점인원 :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(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%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음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,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으며, 분야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
-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**국가보훈처 (☎ 1577-0606)에 확인**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
 -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(국가보훈처, 민원24시)
-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,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
 - ※ 「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1조의2 참고

2. 의사상자

- 기준일시 :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등록된 경우 한함
 - ※ 응시원서 제출이후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필기시험 전일 18:00까지(도착)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제출
- 가점부여점수 : 만점의 3% 또는 5%

- ◆ 각 과목별 만점의 5%를 가산하는 대상자
 -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 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
- ◆ 각 과목별 만점의 3%를 가산하는 대상자
 -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

- 적용대상 :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에 점수를 가산, 다만,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,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- 가점인원 :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10%(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)를 초과할 수 없음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, 9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으며, 분야별 10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
- 의사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**보건복지부 (☎ 044-202-3258)에 확인**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
-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,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

3. 유의사항

-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모두 해당 될 경우 **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**
-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**가산점 표기 및 증빙자료 첨부**(필기시험 OMR 답안지 가산점 표기 없음)
- 가산점 잘못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
- ※ 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 제31조의2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참고

<붙임 4>

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

(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)

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6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7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

1.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
2.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
3.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
4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 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

○ 부정행위자가 당해 필기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합니다.

○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